
『2023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작성 가이드

2022. 9

전력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순 서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1
2. 기본지원사업 종류 및 조건	2
3. 2023년 수립지침 개정사항	3
4. 제출서류	4
5.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5
6.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6
7. 서류제출 유의사항	10
8. 기타 유의사항	11
참고1 사업계획 체크리스트	12
참고2 대표 부적합 사업유형	13
참고3 2023년 사업계획 수립일정	16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2 법적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89.6.16일 제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행요령

3 지원대상 :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의 발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 면, 동)

* 원전의 경우, '주변지역'이 속한 지자체(시·군·구)의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30% 이내에서 지원 가능('20년 시행)

4 세부사업별 지원대상.기준

세부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 등	시행자	지원기간
기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범위) 건설 및 운영 중인 발전소주변지역 ▪(산정기준) 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지원단가(원/kWh) + 설비용량(MW)×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MWh) 	지자체 발전자	건설 및 운영기간 중 (매년)
특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범위) 발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관할 자치단체(시·군·구) ▪(산정기준)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범위 내 * 원전 자율유치, 원전 9기 이상 건설 또는 유연탄 100만kW 이상 자율유치 시 0.5% 가산금 지원 	지자체	실시계획승인고시일~운전개시일 (건설기간 중 1회)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등 지원) ▪ 연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 범위 내 	지자체	매년

2 기본지원사업 종류 및 조건

사업종류	세부내용	조건
소득증대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하는 사업 -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관리 등 규정한 운영규칙 마련
공공·사회복지	<공공시설>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프로그램>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 사업시행 이후 시설물을 지자체가 소유 할 수 있는 사업 - 시설물을 지역주민단체에게 이관 하는 경우 당해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 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운영에 참여해야 함
육영	교육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5~30% 범위 내에서 결정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연간 총액 2억 이하인 경우 지역특성에 따라 결정) - 육영사업비가 1억 이상인 지역은 일정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가능
주민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주민건강진단비, TV 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	<용자사업> - 해당 지역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실시 - 관내에 소재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용자금 대여약정 체결 및 운영 - 조례로 기준 제정 <주민복지> - 지원한도: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20% 이내 - 단 주민건강진단비는 지원한도 예외
기업유치지원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기업의 유치·설립·운영에 필요한 용자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 - 조례로 기준 제정
전기요금보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원전 또는 연간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 이상인 발전소 * 지원한도 : 기본지원사업비의 40%이내 -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 이상 원전, 유연탄, 무연탄 화력발전소: 5% 이상 의무 사용
그밖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역홍보(지역이미지 제고) 등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3 2023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사항

- 1 (특별지원사업 예산편성) 그동안의 관행(발전소 준공연도 기준, 기계적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주민동의 등의 사업준비상황, 전년도 집행실적, 발전소 준공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자의 실집행률을 제고
- 2 (사업심의횟수 축소 3회→2회) 사업계획서 제출은 발주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1회(10월말)로 하고, 심의횟수도 1회(12월)로 하되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미흡한 경우 재심의(익년 3월)
- 3 (소득중대사업 의무시행자 기준완화) 소득중대사업 의무비율(30% 이상) 적용대상 완화(시행자별 기본·특별 합산 2억원 이상 지자체 → 시행자별 기본·특별 합산 5억원 이상)를 통하여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
- 4 (지원대상 주민자격 근거마련)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자격요건이 지역별·마을별로 모호하여 민원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혜주민 자격요건에 대한 모호성 제거
- 5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결과를 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보공개 활성화 유도
- 6 (평가지침 개정) 사업평가 시 지원대상 주민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칙 또는 지침 제정(2점) 및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준수(3점)에 가점 부여(총 5점)
- 7 간접보조사업자의 계좌는 단체명의로 개설·운영하도록 명기함
- 8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원한도*에서 주민건강진단비는 제외**함

*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로 함(시행요령 제15조)

** 발주변 시행요령 제15조제6항 신설 (산업부 고시 2022-94호, 22.5.20.)

4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구분	No	신청서류 내역	제출형식
필수	1	[서식4] 사업계획서 *직인 날인 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소별로 HWP 형태, 모아짜기(2쪽씩) 하지 말고 쪽 번호 없이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별도의 HWP 파일을 만들어 제출
	2	[서식4-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3	[서식4-2] 단위사업계획서	
	4	[서식6]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5	증빙서류	
선택	6	[서식4-3] 시설 운영계획서 *직인 날인 후 제출	
	7	[서식5] 사업운영비 지출계획서	

2 증빙서류

No	구분	증빙서류
1	단가 50만원 이상 물품 구입	나라장터 가격정보, 나라장터 가격정보 없을 시 기타 견적서
2	토지매입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지가정보, 실거래가확인 가능서류
3	공사비	공사비 산출내역서
4	지역위원회 의무시행자	지역위원회 회의록
5	주민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시행한 사항 - 사진,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내용 캡처화면 등

5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관련 법령과 규정, 절차의 준수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규정, 절차 등을 준수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추진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수립지침**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해당 읍·면·동에 비치해야 함
 - 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역위원회 의무시행자**는 **기본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역위원회 심의**를 시행
 - 시행요령 제21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재단 등에 대한 소유와 관리는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것이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단체에게 이관**하는 경우 **당해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에 참여**해야 함
 - 법 제3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2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확보

- 주민의견 수렴, 사업계획 공개 등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참여 절차와 **사업계획의 선정과정, 선정결과, 심의지역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절차 마련**
 - *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우편, FAX 등을 통해서도 의견접수
 - * **산업부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과 지역위원회 회의록**은 지원사업 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변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변경을 최소화 (사업간변경 상반기 시행(5월), 하반기 신청불가)**
 - 사업종류 내 단위사업계획 변경(**사업내변경**) : 사업시행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 사업종류 간 계획변경(**사업간변경**) :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 **산업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6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각 부문에 대한 작성내용을 제시하고, 이 중에 중요한 작성요령을 작성예시를 통해 이해력을 높임

1 서식 4-1 <지원사업계획서> 사전절차이행여부 점검표 작성

- 작성목적 : 사업계획 수립 전 주민의견수렴 여부, 지원사업계획의 선정과정, 선정결과 공개방안 이행여부 확인
- 작성요령 : ① 주민의견수렴과정, ② 지역위원회 심의운영(해당시), ③ 확정사업계획 공개(산업부 심의확정이후로 일자 기재) 필수 작성
- 작성예시

구 분	일 자	세부 내용	비 고
①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전문가 의견 등 포함)	'22 9. 10	○ 시 홈페이지 계획 게시 및 의견수렴 - 00명 의견 제출 및 계획 반영	
	'22 9. 20	○ 주민공청회 개최 - 주관 : 00시 00과 - 장소 : 00시 회의실 - 참석인원 : 00명 - 개최결과 : 사업 item 수렴 및 선호 사업 의견 청취	
	'22 9. 25	○ 주민설명회 개최 - 주관 : 00시 00과 - 장소 : 00동 주민센터 - 참석인원 : 00명 - 개최결과 : 의견 수렴 및 세부사항 수정	
② 지역심의위원 운영	'22. 10. 6	○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심의)현황 - 장소 : 00시 회의실 - 참석인원 : 9명(위원12명) - 심의결과 : 사업계획(안) 확정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시 작성
	'22 10. 8	○ 지역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 방법 : 00시 인터넷 게시, 관보열람 - 게시기간 : '22. 10. 8 ~ - 내용 : 회의록 내용 및 심의현황	
③ 확정사업계획(안) 공개	'23. 1. 1	○ 사업계획(안) 공개 현황 - 방법 : 00시 인터넷 게시, 관보열람 - 게시기간 : '23. 1. 1 ~ - 내용 : 지원사업계획 내용 및 추진일정 등	
기타사항	'22. 11. 7	○ 일부 주변지역 주민 이의제기 - 주민 설득으로 원만히 해결	해당사항 없을시 작성불요

2 서식 4-2 <단위사업계획서>

○ 작성요령

- ① 세부사업 :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中 선택
- ② 사업종류 :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전기요금보조, 육영, 기업유치지원, 그밖의지원 中 선택
- ③ 사업명 : 사업명은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사업내용을 담아야 함

【잘못된 작성 예시】

- ○○발전소 기본(특별)지원사업(x), 소규모 주민숙원사업(x), 주거개선사업(x)
- ○○본부 장학금 지원(x) → 중고등학생(수혜자 명시) 장학금 지원사업(○)
- 방과후교실(x) → 초등학교(수혜자 명시) 방과후수업 지원 (○)
- 전기요금보조사업(x) → ○○지역 주택용(산업용)(용도 명시) 전기요금보조사업(○)
- 태양광시설(x) → ○○마을 ○○kW(시설용량 명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 ○○리 부지매입(x) → 마을회관 신축(목적 명시) ○○ 부지매입(○)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x) → ○○마을 ○○(사업내용) 환경개선(○)

- ④ 사업시행자 : 지자체명 또는 발전사명
- ⑤ 사업추진방식 : 시행자직접 시행 /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 표시
- 간접보조사업자 선택 시 간접보조사업자명, 간접보조시행근거, 간접보조사업 시행사유, 사후관리방안 반드시 작성

【발주법 시행요령 제18조2, 수립지침3장2】

-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부 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마을회 등에 위임 가능
- 재위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간접보조사업)시행 기준
 - 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④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⑥ 사업효과 : 소득증대사업의 경우 예상 기대수익 작성
- ⑦ 지원사업비 산출내역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공사의 경우 1식 표기 지양

단위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2) 사업명 : ○○마을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지역특산물인 ○○마을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딸기 재배 관련 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업기술 선진화

□ 사업필요성

-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작업시설 현대화 및 작업 능력 향상필요
-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특산물 판매 증진 통한 주민 소득증대 기여

(4) 사업기간 : 2023.2 ~ 2023.12

(5) 사업시행자 및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	사업추진방식		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시행 근거
	시행자 직접 시행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	○○단체	□□시 규칙 제○조에 의거

간접보조사업 시행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간접보조사업)시행 기준 4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고 간접보조시행 불가피성 작성 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p>○○단체는 마을주민의 100%동의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접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함. ○○단체는 다년간의 농업작목반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딸기작목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p>
간접보조사업 사후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1회 간접보조사업의 시행 실태를 정기검사와 필요한 경우 감사 수행 ○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며 입찰 필요시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조달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입찰 의뢰하도록 하겠음 ○ 사업비 지급시 사업초기 일괄지급을 지양하고 사업진도에 맞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겠음 ○ 그 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6) 사업개요

사업내용

-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딸기 작목반 공동작업장 건립지원

(7) 사업장소 : 전령군 전령리 ○○번지 딸기 재배단지

(8) 사업효과: 소득증대사업의 경우 기대수익(예상수익금) 작성

그간의 효과(계속사업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기대효과

- 공동작업에 참여한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
- 작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선진농업기법 습득 및 노령 주민의 투입 노동력 감소

(9) 연차별 사업계획

연도별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당해년도 (2023년도)	기지원 (2022년도)	향후 소요전망		
			2024년도	20 년도	20 년도
총사업비	1,500,000	500,000	500,000	500,000	
지원사업비	1,500,000	500,000	500,000	500,000	

(10) 지원사업비 산출내역

연도별 계획 (단위 : 천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 부지구입	■ 100(평) × 250천원(평,3.3㎡당) = 50,000천원	25,000	
■ 설계용역	■ 건축설계용역비 25,000천원	25,000	
■ 공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토목공사 : 150,000천원 ■ 오수, 우수, 상수도 공사비 : 55,000천원 ■ 포장 공사비 : 20,000천원 ■ 건축, 전기공사: 200,000천원 ■ 기타부대공사 : 25,000천원 	450,000	
합계		500,000	

(11)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사항 없음

(12) 특기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참고자료 : 자체 사업계획서, 공사비산출내역서

7 서류제출 유의사항

- 1 **전담기관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제출분에 한하여 사업심의, 공문만 제출하고 홈페이지 미입력시 심의 제외**
- 2 **발전소별로 아래의 순서로, 모아찍기(한페이지에 2쪽씩)와 쪽번호 없이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 ① (서식4) 사업계획서
- ② (서식4-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 ③ (서식4-2) 단위사업계획서
- ④ 견적서, 공사비산출내역, 회의록 등 증빙서류
- ⑤ (서식4-3) 시설 운영계획서
- ⑥ (서식5) 사업운영비 지출계획서
- ⑦ (서식6) 분기별자금소요계획서

3 자료 제출 형태: 23년○○차_시행자명_발전소명_사업계획서.hwp

○ 작성예시

- 23년75차_전력시(전력군, 전력시 전력구)_전력발전소_사업계획서.hwp

○ 증빙서류가 많아 별도 제출 시

- 23년75차_전력시(전력군, 전력시 전력구)_전력발전소_증빙서류.hwp

【 첨부파일 제출예시 】

기부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지정액(천원)	건수	지정액(천원)	건수																																												
<table border="1"> <tr> <td>〈 예산배정액 〉</td> <td>5,400</td> <td>0</td> <td>0</td> </tr> <tr> <td>공공·사회복지사업</td> <td>5,400</td> <td>0</td> <td>0</td> </tr> <tr> <td>스마트도시사업</td> <td>0</td> <td>0</td> <td>0</td> </tr> <tr> <td>주거복지지원사업</td> <td>0</td> <td>0</td> <td>0</td> </tr> <tr> <td>기업유치지원사업</td> <td>0</td> <td>0</td> <td>0</td> </tr> <tr> <td>중기유망프로젝트사업</td> <td>0</td> <td>0</td> <td>0</td> </tr> <tr> <td>육성사업</td> <td>0</td> <td>0</td> <td>0</td> </tr> <tr> <td>그린복지지원사업</td> <td>0</td> <td>0</td> <td>0</td> </tr> <tr> <td>〈 합 계 〉</td> <td>5,400</td> <td>0</td> <td>0</td> </tr> <tr> <td colspan="2">총부사업</td> <td colspan="2">의견취급감시기구</td> </tr> <tr> <td>0</td> <td>0</td> <td>0</td> <td>0</td> </tr> </table>				〈 예산배정액 〉	5,400	0	0	공공·사회복지사업	5,400	0	0	스마트도시사업	0	0	0	주거복지지원사업	0	0	0	기업유치지원사업	0	0	0	중기유망프로젝트사업	0	0	0	육성사업	0	0	0	그린복지지원사업	0	0	0	〈 합 계 〉	5,400	0	0	총부사업		의견취급감시기구		0	0	0	0
〈 예산배정액 〉	5,400	0	0																																												
공공·사회복지사업	5,400	0	0																																												
스마트도시사업	0	0	0																																												
주거복지지원사업	0	0	0																																												
기업유치지원사업	0	0	0																																												
중기유망프로젝트사업	0	0	0																																												
육성사업	0	0	0																																												
그린복지지원사업	0	0	0																																												
〈 합 계 〉	5,400	0	0																																												
총부사업		의견취급감시기구																																													
0	0	0	0																																												
No	구분	사업종류	사업명	지정액(천원)	변경여력	상태	제출 【처리일】																																								
1	기부지원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합호3회 권호당 필요충분 지원	2,100	-	승인	2021.12.31																																								
2	기부지원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총호1회 권호당 필요충분 지원	6,300	변경후:74차	승인	2022.06.01																																								
스계(기부지원사업)				8,400																																											
합 계																																															
첨부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75차_전력시_전력발전소_사업계획서.hwp • 23년75차_전력시_전력발전소_증빙서류.hwp 																																											

8 기타 유의사항

- 1 **(소득증대사업)** 농지매입은 ‘영농조합’ 명의로만 가능하며, 농지매입 후 활용방안 구체적으로 명시, 매입한 농지를 개인에게 임차하는 사업은 소득증대사업으로 적당하지 않음
- 2 **(육영사업)** 행사성 사업을 구체성 없이 포괄적 수립 후 발전사업자의 대외협력·민원응대성 사업비로 집행하는 사례 지양
- 3 **(사업비 계좌 분리 운영)** 타기금 및 타 지원금과 별도 분리·운영해야 하며, 발전소별 및 사업별(기본지원/특별지원/기타지원/사업운영비)로 구분하여 개설하고 운영해야 함
* 근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지원금의 관리 등)
- 4 **(중요재산 관리 철저)**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행위 금지
* 근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 5 **(관련 법령 준수)** 지원사업 추진 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 절차 준수, 산업부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 금지
* 근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제3장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가.(1)
- 6 **(간접보조사업 관리 강화)** 사업시행자의 장이 정한 규칙 등에 따라 간접보조방식으로 시행 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사후관리방안 마련, 간접보조사업자 관리 철저
* 근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요령 제18조의2(지원사업의 시행)

참고1 2023년 사업계획수립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YES	NO
1	2023년 예산내역을 확인하셨습니다가?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2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하셨습니다가?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3	(*지역위원회 개최대상)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다가?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4	지역위원회 회의록과 사업계획수립지침을 인터넷에 공개하셨습니다가?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5	확정사업공개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셨습니다가?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6	사업종류와 세부조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셨습니다가?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7	(간접보조사업 시행 시) 시행근거, 시행사유, 사후관리방안을 작성하셨습니다가?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8	지원사업비내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나요?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9	지원사업비산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준비되었습니까?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10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록하셨습니다가?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 가동·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가동·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전소

참고2 대표 부적합 사업유형

1 (개별지원) 지원사업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별·세대별 지원**은 법령 및 시행요령 등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외 불인정

- (개별지원 예외인정) 장학금 지급(시행요령 제12조), 전기요금보조(시행요령 제14조), 주민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전기요금(시행요령 제15조, 전기요금보조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개별지원 관련 부적합 사업사례 >

사업명	부적합 사유
공공사회사회복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 임금	특정 개인 지원
보훈유공자 대상 긴급사회복지 차량지원	특정 개인 지원
주민 대상 농자재 교환권 구입	특정 개인 지원
공공시설 및 공원관리 인부임 지급	특정 개인 지원
재해 피해가구 구호물품 지원	특정 가구 지원, 지자체 예산
개별 주택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지원	특정 가구 지원, 개인소유
희망 바구니사업 (위기가정 온누리상품권 지급)	특정 가구 지원
새터민 대안학교 운영지원사업	특정 계층 지원
북한 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교재비 지원	특정 계층 지원
소외·취약계층 LED 교체공사, 김장행사, 반찬나누기	특정 계층 지원
○○아파트 CCTV설치, 엘리베이터교체, 옥상방수 공사	특정 아파트 지원
○○아파트 경비실 증개축	특정 아파트 지원
○○아파트 내 북카페 의자·테이블 구입	특정 아파트 지원
○○아파트 에너지사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특정 아파트 지원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특정 아파트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이용시설 기능보강	특정 단체 지원
○○에코센터 운영 지원	특정 단체 지원
문화전승행사 운영경비 지원	특정 단체 지원
발전소 사업을 위한 사무운영 경비	특정 단체 지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소 및 휴게공간 조성	특정 계층 지원
봉사활동 단체 지원	특정 단체 지원
교통약자 수송 약자 운영경비 지원	특정 계층 지원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	특정 개인 지원
저소득층 주택용 소화기 지원사업	특정 가구 지원
취약계층 가스안전 차단기(가스콕) 지원	특정 계층 지원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	특정 계층 지원
새마을부녀회 활동 지원	특정 단체 지원

2 (선심성·행사성 사업) 문중회, 번영회, 마을회, 각종 단체 등 지역 특정 단체의 각종 행사 관련 운영비, 일회성 지원 및 선심성 사업

사업명	부적합 사유
○○리 수제맥주 축제 지원	행사성 사업
○○지역 페스티벌 지원, ○○항 수산물 축제 지원	행사성 사업
○○리 종량제 봉투 구입	일회성 사업
○○읍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참여자 선진사례 견학	행사성 및 선심성 사업
사회복지실천가 처우개선 프로그램	선심성 사업
주민역량을 키우는 마을복지리더 양성	일회성 및 선심성 사업
○○면 체육회 운영비 지원	선심성 사업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행사성 사업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구입	일회성 지원
주민문화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성 사업

3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사무는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며, 행정복지센터는 행정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물로 보기 어려움

사업명	부적합 사유
○○동 행정복지센터 물품지원	지자체 예산 집행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 강화 사업	지자체 예산 집행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집기 비품 구입	지자체 예산 집행
○○시 관내 주차선 재도색	지자체 예산 집행
○○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지자체 예산 집행
○○시 청사 이전 및 신축사업	지자체 예산 집행
○○시 청사 전자 안내판 설치	지자체 예산 집행
○○관내 차선도색 정비공사, 도로 블록 교체	지자체 예산 집행
교통사고 위험교차로 신호기 설치와 정비	지자체 예산 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자체 예산 집행
육교 환경 개선사업	지자체 예산 집행
각종 재해 대비 및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지자체 예산 집행
하수구 맨홀 교체사업	지자체 예산 집행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	지자체 예산 집행

4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설물이 간접보조사업자인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유로 귀속되어 불가, 공공·사회복지사업은 시설물을 시행자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시행요령 제11조 제1항)

5 (부동산사업)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단순 임대하는 사업은 소득증대사업(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사업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 소득증대사업 중 영농조합명의로 농지구입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은 불가, 소득증대사업은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함

6 (시행자별 불가능 사업)

- 지자체 : 육영사업 불가
 - 단, 원전 지자체 고창, 기장, 경주, 울주, 울진, 영광 가능
- 발전사 : 지자체가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 복지, 기업유치지원 불가, 단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협의 공문 제출 시 가능

7 (기타) 캐릭터, 이정표, 마을상징물, 표지석, 분수대 등 각종 조형물

사업명	부적합 사유
○○면 관내 마을 이정표 설치사업	발주변 사업목적 미부합
○○시 캐릭터 ○○○ 설치사업	발주변 사업목적 미부합
○○읍 ○○리 마을 표지석 설치	발주변 사업목적 미부합

참고3 2023년 사업계획수립 일정

추진단계	주요 업무	시기	관련법령
■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내실화 추진 (전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기재부) ○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안내(전담기관→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별 지원금 산출내역, 배분계획 및 작성방법 등 ○ 기금운용계획 작성자료 제출(사업시행자→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별 지원금 내역 및 배분계획, 특별지원금 연차별 사업계획 등 ○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산업부→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정부안 확정(기재부)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국회 확정(국회) 	3월말 4월초 4월말 5.31 6.1~8/31 9.1~12.2	국가재정법 제66조
↓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통보(산업부→전담기관→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개요/투자계획/시행기간/자금사용계획 등 ○ 기금운영계획(정부안) 통보 	8월까지 예산확정 후	발주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7조
↓			
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계획안의 제출(시행자→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수렴 및 지역심의위 심의, 지역현안사업 등 반영 ○ 지원사업계획안의 검토 및 제출(전담기관→산업부) 	10월말 11월	"
↓			
지원사업계획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계획안 심의 및 의결(산업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검토/ 시행자별 지원금 배분 등 ○ 지원사업계획 시행자 확정 통보 및 후속조치 안내 ○ 2차 지원사업계획안 심의 및 의결(산업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에 보류된 사업계획 및 특별지원금 내역변경 사업 	12월 익년 3월	"
■ 사업관리			
▶ 사업 진도점검/모니터링 강화 (당해연도)			
지원금신청/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분기 개시전 시행자별 자금신청 ○ 분기 개시후 10일 이내 교부(계획적/탄력적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실적 반영 지원금 지급시기 조정 	매분기	발주법 시행령 제26조
↓			
집행실적 관리 및 진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시행결과 제출(시행자→전담기관) ○ 현장실태점검 및 모니터링 종합(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점검 및 결과보고(전담기관→산업부) 	매분기 수시	발주법 시행령 제31조 및 사업운영규정 제27조
■ 사업결산			
▶ 사업성과 및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 (차년도)			
사업결과 제출 및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자 결산보고서 검토 및 제출(시행자→전담기관→산업부) ○ 사업비 사용내역 회계법인 위탁정산 ○ 사업비 결산심의 및 확정(산업부 위원회) 	2.10 4.10 5~6월	보조금법 제27조 및 시행령 12조